



전자저널의 도서관 상호이용 문제점과 대응 방안 연구

황 옥 경, 이 두 영
서울여대 강사
(hmirim7@dreamwiz.com)

전자저널의 도서관 상호이용 문제점과 대응 방안 연구

A study on the interlibrary use
for e-journal

황옥경, 이두영

1. 연구의 목적과 방법

- 전통적인 인쇄 형태의 자원
 - 구입 또는 구독을 통해 자원을 소유
 - 도서관의 자원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자원 제공
- 전자 자원
 -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자원의 이용권 및 접근권 획득
 - 계약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이용자에게 자원 제공

1. 연구의 목적과 방법

- 전통적인 인쇄 형태의 사본
 - 이익 또는 권익을 추구하는 사서에게서 도서관의 정보접근 및 이용에 제한을 가하는 수단
- 신시 자원
 -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지구의 이용권 및 저작권 획득
 - 계약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이용자에게 제공

2004년 5월 21일

3

- 라이선스 계약
 - 1990년대 중반부터 등장한 비교적 새로운 현상
 - 라이선스 계약 내용 및 조건에 대한 논란
 - 도서관 상호이용도 이러한 논란 중의 하나
 - 문제점:
 - 라이선스 상의 도서관 상호이용 관련 조항에 대한 사서의 이해 부족
 - 더 나은 계약 내용 및 조건을 위한 협상에 임하는 사서의 적극성 부족
- 전자저널의 도서관 상호이용 관련 대응 방안 모색의 필요성 대두

2004년 5월 21일

4

- 연구방법

- 선행연구: 전자저널의 도서관 상호이용 관련 논쟁점 고찰
- 국내외 라이선스 상의 도서관 상호이용 관련 조항 분석
- 전자저널 도서관 상호이용의 문제점 도출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

2004년 5월 21일

5

2. 용어정의

- 도서관 상호대차
 - 대차라는 용어는 어느 한 시점에서 자료가 되돌려 보내지는 것을 의미
 - 디지털 자원의 경우에는 “오해의 여지가 있는 용어”(Croft, 2001)로서,
 - “타도서관으로의 제공”(Cox, 2000),
 - “도서관상호이용”(Giavarra, 1998
 - “타도서관으로의 자료 전송”(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, 2003) 등의 용어가 제시되거나 쓰이고 있음
-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상호이용으로 통일

2004년 5월 21일

6

3. 도서관 상호이용의 법적 배경

3.1 전자저널의 공정이용

- 공정이용은 베른협약 및 세계인권선언 제 27조에 명시
- 저작권법에서의 공정이용 제한
 - 도서관 면책 조항의 축소
 - 관내 전송에 한해 “보관된 도서 등”만을 이용해 복제하거나 전송 가능
 - “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이용허락을 받은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”
 - 기술적 보호조치를 통한 제한

2004년 5월 21일

7

3.2 전자저널의 최초판매 원칙

- 최초판매의 원칙의 주요 기능
 - 저작권의 경쟁 제한적 목적에의 남용 제한
 -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
- 디지털 자원의 최초판매 원칙의 문제
 - 전송의 경우, 복제가 이루어진다는 점
 - 전송이 완료된 시점에도 전송자는 전송의 대상이 되었던 저작물을 그대로 보유: 전송권의 신설

2004년 5월 21일

8

3.2 전자저널의 기초규범 원칙

- 도서관에서 복제된 자료는 저작권, 정보통신망법, 지식재산권의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.
- 1. 지역 차이를 초월한 접근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 확보
 - 저작권 관련 법적, 기술적, 경제적 장벽 극복
 - 공공기관, 민간기관, 기업, 대학, 연구기관, 민간기업 등과의 협력
 - 2. 정보통신망법 제 23조 제 2항: 전송권의 신설

전송권을 통한 제한
기술적 보호조치를 통한 제한

3.3 전자저널의 도서관 상호이용

- 저작권법 제 28조 제1항 제3호: “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,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” 도서관 등에 보관된 도서 등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디지털 형태로는 복제 불가
- 도서관간의 열람 목적의 전송 및 디지털 도서 등의 출력 등에 대해서는 도서관 보상금제도 도입
-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용에 제한을 받는 것은 불합리

3.4 도서관보상금제도와 관련한 문제점

- 전송받은 자료의 출력
 - 디지털 자료의 이용에서 일반적으로는 출력에 대한 묵시적인 허락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
 - 그러나 (도서관 상호이용에 따라) 전송 받은 디지털 자료의 출력은 도서관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되어 있어 불합리
- 판매용 발행 후 5년 경과 자료의 전송
 - 일반적으로 학술 저널은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가치 저하
 -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경과 전자저널에 대해 도서관보상금 지급 규정을 두는 것은 불합리
 - 자료 보존 및 아카이브 규정과 더불어 고려해야 할 사항

2004년 5월 21일

11

- 비판매용 자료의 전송
 - Open access 저널과 같이 학술 자원의 자유 이용을 지지하는 저널에 대한 고려 필요
- 해외 전자저널에 대한 보상금 분배 문제
 - 징수한 도서관보상금의 배분 방법에 대한 규명 필요

2004년 5월 21일

12

4. 도서관 상호이용 관련 라이선스 조항 비교분석

4.1 국외

- LIBLICENSE 라이선스
- Cox 라이선스
- JSTOR 라이선스
- CNSLP/PCLSN 라이선스
- NESLi2 라이선스

2004년 5월 21일

13

- Cox 라이선스
 - EBSCO, Harrassowitz, RoweCom, Swets Blackwell과 같은 대형 벤더들의 지원 하에 개발된 라이선스
 - 제4조에서 3가지 조항 중 선택
 - 제1항: 인쇄 형태의 복제본 제공 허락
 - 제2항: 디지털 파일 형태의 제공도 허락
 - 제3항: 도서관상호이용을 전면 금지
- JSTOR 라이선스
 - JSTOR는 핵심 학술 저널에 대한 백업파일을 보유하고 이를 전자자료 형태로 제공하는 비영리기관으로 도서관과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위해 개발한 라이선스
 - 3.5항에서 인쇄 형태의 복제본으로 도서관 상호이용 허락, 디지털 복제본은 불허

2004년 5월 21일

14

- LIBLICENSE 라이선스

- 예일대학도서관 개발
- IV조의 도서관 상호대차 항목에서 미국 저작권법 제 108조에 따라 도서관 상호대차를 허락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조건은 제시되어 있지 않음

- CNSLP/PCLSN 라이선스

- 캐나다의 64개 대학으로 이루어진 컨소시엄을 위한 라이선스
- 제4조에서 상업적 이용이 아닌 연구나 사적 연구가 목적인 경우, 인쇄 형태의 복제본으로 또는 전송 받은 도서관이 출력 후 파일 삭제 조건에 한해 Ariel을 통해 도서관 상호이용 가능 명시

- NESLi2 라이선스

- JISC 전자저널 이용 계약을 위한 라이선스
- 3.1.7조항에서 (우편이든 팩스이든 보안이 되는 전송이든) 디지털 파일이 인쇄 후 즉시 삭제되는 조건에 한해, 연구나 사적 이용의 목적인 경우, 인쇄 복제 한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

<표 1> 국외 라이선스 사례별 도서관 상호이용 관련 조항 비교

조항		Cox	JSTOR	LIBLIC ENSE	CNSLP/ PCLSN	NESLi2
허용	인쇄본 한 부	O**	O	O*****	O	O
	보안 전송 후 출력 완료와 동시에 파 일 삭제	O**	X****		O	O
	전자적 전송	O**	X****			
불허		O**				

※ 각 라이선스는 공히 사적 이용 및 비상업적 이용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다.
 ※※ 4가지 조항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다
 ※※※ x의 표시는 라이선스 상에 불가하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음을 의
 미한다
 ※※※※ 도서관 상호이용을 허락하되, 구체적인 시행 방법에 대한 규정은 제시되어
 있지 않다

2004년 5월 21일

17

4.2 국내

- KESLI CONSORTIUM-KLUWER ONLINE
- ISI Agreement
- Nature Online Academic License Agreement
- Project Muse Subscription Agreement
- ScienceDirect License Agreement for Electronic Publications and Information Services

2004년 5월 21일

18

<표 2> 국내 라이선스 사례별 도서관 상호이용 관련 조항 비교

조항		A	B	C	D	E
허용	인쇄본 한 부		O**	O	O	
	보안 전송 후 출력 완료와 동시에 파 일 삭제			O	O	
	전자적 전송					
불허					X***	
명시되어 있지 않음		O				O

* 계약내용 기밀 유지를 요하는 라이선스가 있어 편의상 A,B,C,D,E로 명시.
 ** 구독자와 동일 국가 내에 위치한 비영리 연구도서관 혹은 대학도서관의 요청에 따라 도서관 상호대차를 수행할 수 있으나 도서관 상호대차가 가능함을 홍보하지 못한다는 단서가 있다.
 *** x의 표시는 라이선스 상에 불가하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.

2004년 5월 21일

19

1) 관련 조항이 없는 경우

-- 도서관이 상호이용 서비스에 대한 허락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 어려움

2) 특정 조건 하에서 허락하는 경우

- 공통적인 허락 조건

- 대학도서관이나 비영리기업 연구도서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도서관 상호이용 서비스 수행 가능
- 요청받은 기사를 인쇄하여 요청 도서관으로 우편 발송을 하거나 팩스로 전송

- 기타 허락 조건

- 요청하는 대학도서관이나 비영리기업 연구도서관이 라이선스와 동일 국가 내 위치
- Ariel 혹은 Prospero와 같은 팩스 기반의 서비스 허락
- 도서관 상호이용 서비스에 대한 홍보 상가

2004년 5월 21일

20

5. 전자저널의 도서관 상호이용 대응 방안

5.1 기본 원칙

- 전자저널의 라이선스 계약으로 인해 공정이용과 도서관 상호이용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.

2004년 5월 21일

21

5.2 도서관보상금제도 관련 대응 방안

- 전송받은 자료의 출력에 대한 제한
 - 도서관 상호이용에 따라 전송 받은 전자저널 자료의 출력인 경우에는 저작권 제한으로 규정
- 판매용 발행 후 5년 경과 자료의 전송에 대한 제한
 - 도서관 상호이용이 허락되었던 전자저널의 5년 경과 자료를 다른 도서관 등으로 전송하는 경우는 저작권 제한으로 규정

2004년 5월 21일

22

- 비판매용 자료의 전송에 대한 제한
 - Open access 저널의 경우 저작권 제한으로 규정
- 해외 전자저널에 대한 보상금 분배
 - 구체적인 보상금 배분 방법 규정

2004년 5월 21일

23

5.3 라이선스 계약 관련 대응방안

- 라이선스 계약 및 협상에 대한 도서관 사서의 이해 부족
 - 라이선스상에 도서관 상호이용 관련 조항을 반드시 확인
 -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불허하는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협상을 통해 계약 조건 개선
- 라이선스 사례에 대한 정보 부족
 - 라이선스 상에 계약 내용 및 조건에 대한 기밀 유지 조항을 삭제

2004년 5월 21일

24

4. 결론

2004년 5월 21일

25